

1. 법률명	‘보복성 포르노(revenge porn)’ 금지 조례 (Int 1267-2016) - Prohibiting certain disclosure of intimate images
2. 제·개정 일자	2017. 11.16
3. 발의자	Rory Lancman 등 20인
4. 시행일자	공포 후 즉시 시행
5. 소관 상임위	공공안전위원회(Committee on Public Safety)
6. 제·개정 배경 및 사유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헤어진 연인에게 복수를 하기 위하여 상대방의 동의나 인지 없이 배포되는 음란물 영상인 ‘보복성 포르노(revenge porn)’는 피해자에게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히는 등 큰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음.</li> <li>- 뉴욕시의회 로리 랭크만 의원과 대니얼 개로드닉 의원 등의 주도로 제정된 동 조례는 상대방의 동의 없이 상대방에게 심리적 고통을 줄 목적으로 성적 이미지를 유포하는 것을 금지(prohibiting certain disclosure of intimate images)함으로써 보복성 포르노로 인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임.</li> </ul>
7. 주요 내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동 조례는 경제적, 물질적, 실질적인 감정적 해를 입힐 의도로 상대방의 동의 없이 어떠한 사람의 사진이나 영상 등의 이미지(intimate image)를 유포하는 것을 금지함.</li> <li>- 사진이나 영상 등의 이미지(intimate image)를 소유하거나 접근 가능한 사람(covered recipient)이 이를 유포하겠다고 위협을 가하는 것을 금지함.</li> <li>- 이러한 금지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,000달러 이하의 벌금형에 처함.</li> <li>- 동 조례(this local law)는 공포 후(after it becomes law) 즉시 효력이 발생함. 다만, 형벌 관련 부분은 6개월이 경과한 후 효력이 발생함.</li> </ul>
보고자 : 강대훈 뉴욕주재관 (2017. 12. 15.)	